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75
----------	------

발의연월일 : 2017. 4. 3.

발의자 : 박맹우 · 김승희 · 김도읍  
정갑윤 · 이채익 · 이종명  
조경태 · 이현재 · 김한표  
유재중 · 박완수 · 윤영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임. 한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연간공급량: 1억 m<sup>3</sup>)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지도·감독) ① ~ ③ (생략)</p> <p>④ <u>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21조(지도·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u></p> <p>-----</p> <p>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p> <p>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p> <p>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p> <p>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⑤ · ⑥ (생략)	